

지역지원센터의 지정기준(제5조제1항 관련)

구분	지정기준
조직	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상담, 정보 제공, 직업교육 훈련, 취업지원 등을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
인력	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갖추어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지원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상근 지역지원센터의 장 1명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인력개발,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또는 경력단절 예방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인력개발, 취업지원,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- 인력개발,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여성의 구인·구직, 취업지원 또는 직업교육훈련 등을 상담하는 상근 종사자 3명 이상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-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시설 및 장비	- 여성의 구인·구직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, 사무실 및 임시보육 공간 등의 편의시설과 그 밖에 취업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것. 이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 -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,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. 다만, 지역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. - 지역지원센터가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외부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그 기관(현장실습을 하는 산업체는 제외한다)도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것